

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1. 10. 18. (화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=

총무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	2
2. 거창군 사무의 읍·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	6

<의안번호 제2011 - 62호>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10월 6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10월 6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10월 17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,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일반·지도(연구)직 복수정원은 규정에 적합하게 분류하는 등 우리 군의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2)
 - 현행 : 4급이상 1% 이내, 5급 6.4% 이내, 6급 28.2% 이내, 7급 31%이내, 8급 25% 이내, 9급 8.4% 이상
 - 조정 : 4급이상 1% 이내, 5급 6.7% 이내, 6급 28.2% 이내, 7급 31%이내,

8급 25.3% 이내, 9급 7.8% 이상

2)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2)

- 현행 : 6급 9% 이내, 7급 21% 이내, 8급 24% 이내, 9급 31% 이내, 10급 15% 이상
- 조정 : 6급 9% 이내, 7급 21% 이내, 8급 21% 이내, 9급 49% 이상

3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일반직 5급 : 증 4명
 - 현행 : 31명(본청11명, 의회3명, 직속기관1명, 사업소4명, 읍1명, 면1명)
 - 조정 : 35명(본청11명, 의회3명, 직속기관5명, 사업소4명, 읍1명, 면1명)
- 일반직 6급이하 : 증 15명
 - 현행 : 475명(본청214명, 의회5명, 직속기관62명, 사업소34명, 읍32명, 면128명)
 - 조정 : 490명(본청220명, 의회5명, 직속기관69명, 사업소34명, 읍32명, 면130명)
- 일반직+지도직 5급 상당 : 감 4명
 - 현행 : 4명(직속기관4명)
 - 조정 : 0명(직속기관0명)
- 일반직+지도직 6급 상당 : 감 15명
 - 현행 : 15명(직속기관15명)
 - 조정 : 0명(직속기관0명)
- 일반직+연구직 6급 상당이하 : 감 2명
 - 현행 : 2명(본청2명)
 - 조정 : 0명(본청0명)
- 연구직 : 증 2명
 - 현행 : 4명(본청0명, 직속기관3명, 사업소1명)
 - 조정 : 6명(본청2명, 직속기관3명, 사업소1명)
- 지도직 : 증 8명
 - 현행 : 17명(직속기관17명)
 - 조정 : 25명(직속기관25명)
- 기능직 : 감 8명
 - 현행 : 76명(본청38명, 의회6명, 직속기관6명, 사업소15명, 읍4명, 면7명)

- 조정 : 68명(본청32명, 의회6명, 직속기관6명, 사업소15명, 읍4명, 면5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「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사무 처리지침」 이 행정안전부(2011. 9. 2)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
- 안 ' 별표 2 ' 「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」 에서
 -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6.4% 이내에서 6.7% 이내로, 8급은 25% 이내에서 25.3% 이내로, 9급은 8.4% 이상에서 7.8%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고
 -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8급은 24% 이내에서21% 이내로, 9급 31% 이내에서 49% 이상으로, 10급은 15%이상에서 삭제로 비율을 조정함.

- 안 ' 별표 3 ' 「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」 에서
 - 일반직의 경우 5급은 31명에서 35명으로, 6급 이하는 475명에서 490명으로
 - 일반직+지도직의 경우 5급 상당은 4명에서 0명으로, 6급 상당은 15명에서 0명으로
 - 6급 상당 이하 일반직+연구직의 경우 2명에서 0명으로
 - 연구직 연구사의 경우 4명에서 6명으로
 - 지도직의 지도사의 경우 17명에서 25명으로
 - 기능직의 경우 76명에서 68명으로 각 각 정원을 조정하였음.

- 이와 같이 이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, 업무영역이 축소된 " 사무분야 기능직 " 인력을 감축하며,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함.

- 아울러, 일반·지도(연구)직 복수정원은 규정에 적합하게 분류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1 - 63호>

거창군 사무의 읍·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10월 6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10월 6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10월 17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라 위임 근거조문 및 주관부서를 정비하고, 현지성이 강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읍·면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 정비(안 제1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
-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조

2) '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'에 따라 용어의 순화(안 제3조·제4조)

- ~(의 규정)에 의하여 ⇒ ~에 따라

3) 적용법령 및 주관부서 정비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(안 별표)

- 신설 위임사무(9건), 삭제 위임사무(1건), 근거법령정비(8건)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법령과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- 안 제1조에서는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
- 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'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'에 따라 용어의 순화하며
- 안 별표에서는 군의 사무 중 읍·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 16개 사무에서 신설 9건, 삭제 1건, 근거법령정비 8건 등으로 24개 사무로 확대 정비하였음.
- 이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무를 읍·면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